

인터넷 및 PC통신을 통해 하루에도 수많은 데이터베이스가 생성되면서 저작재산권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이 코너에서 정보제공업자들이 가장 많이 문의하는 것과 창업에 필요한 법률 상식을 Q&A 형식으로 제공한다.

■ 조소연/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정책연구과



**타인의 그림이나 사진을 변형(오려 붙이기, 늘리기, 뒤틀기, 흐리기 등)함으로써 원저작물과 비유사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원저작물에 변형을 가함으로써 새로운 저작물이 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저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변형하여 사용한다면 엄연한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한편 타인의 저작물을 변형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 침해 외에도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 소위 동일성 유지권을 보유하기 때문에, 저작자의 동의없는 저작물의 변형은 이러한 동일성 유지권의 침해가 되는 것입니다. 단 우리법은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에 비추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저작물 이용의 융통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Q** 정부 산하기관으로서 업무상 수집된 기업체 정보(기업체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주생산품, 주요설비 등)를 공중통신망을 통해 일반인에게 제공하려 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기업체 정보를 일반에 제공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일반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서열람, 통신망상에서의 제공 등 공개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단 법은 공공기관에게 특정한 경우에 대해 정보의 비공개를 허용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비공개대상 정보)가 바로 그것입니다. 본 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귀하가 이미

지적하였듯이 개인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가 가능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 기관의 기업체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주생산품, 주요설비 등의 기업체 정보를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제7조 제1항 제6호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국내법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남용을 규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법률에 의한 규제 대상 역시 개인정보(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만 한정되기 때문에 기업체정보는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귀 기관의 기업체 정보 수집의 방법, 내용 및 운영 현황을 상세히 파악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기업체 정보의 수집이 귀 기관의 고유한 수행 업무이고 공익을 위하여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정보라면 공개의 대상이 됨에 하등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단 귀 기관의 수집정보 운영과 관련한 관계 법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기업체로부터 정보 수집 시에 영업비밀 등과 관련하여 비공개 등의 특약이 있었을 경우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7호에서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저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한 취지를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공개시 해당 기업의 영업에 해를 끼칠 염려가 없는 기초적인 기업정보인 경우는 공개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으리라 여겨집니다.

문의: sycho@dpc.co.kr